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 분쟁 시 성상판단업무 활용

◇ 신속·정확한 성상판단업무로 회원사의 피해 최소화 노력

우리 협회는 건설페기물 배출과정에서 중간처리업체와 배출자 간의 폐기물 성상에 대한 이견 및 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회원사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건설페기물 성상판단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하는 경우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편법으로 건설페기물에 가연성폐기물 등을 다량 혼합하여 배출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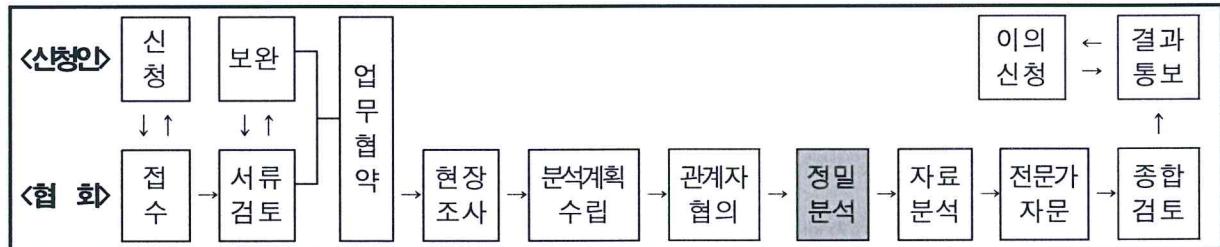
배출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페기물 성상에 대한 배출기관과의 분쟁 발생 시 협회의 성상판단업무를 활용하면 신속·정확한 업무로 회원사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폐기물 성상판단업무 신청 및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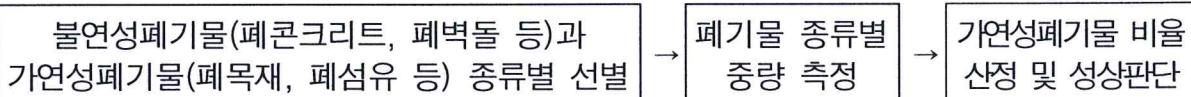
□ 신청 및 구비서류 (협회 홈페이지(www.koras.org) 사업소개 참조)

신청서류	구비서류
◦ 업무지원신청서	◦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
◦ 신청사유요약서	◦ 입찰관련서류(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 업무진행 절차



□ 분석방법



□ 분석기간 : 정밀분석 후 14일 이내

□ 문의처 : 협회 사업지원팀(Tel 02-3476-7787, Fax 02-3476-8464)